산학협력단 연구교수・연구원 임용 규정

제정 2007. 09. 01.
제1차 개정 2017. 05. 3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'산학협력단'이라 한다) 연구교수・연구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산학협력단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연구교수 : 정부, 정부출연기관, 비영리학술재단,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
2. 연구원 : 산학협력단에서 주로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

제3조(구분 및 임용자격) 연구교수・연구원의 임용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연구교수 : 박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
2. 전임연구원 :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
3. 객원연구원 : 본교 이외의 타대학 교원, 관련기관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

제4조(신분) 제3조의 연구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교원과는 구분하나 교원에 준한 신분을 가진다.

제5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 연구교수・전임연구원・객원연구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면한다.(개정 2017. 05. 31)

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교수・연구원을 제청할 경우 임용 희망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임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으로 제출받아야 한다.

1. 이력서 1부
2. 최종학위증명서 1부
3. 경력증명서 1부
4. 해당학과 교수 추천서 1부
5. 연구참여 실적 및 수행계획서 각 1부

③ 연구교수는 산학협력단 연구교수・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르고 재임용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7. 05. 31)

④ 연구교수・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(개정 2017. 05. 31)

・연구교수 : 3년

⑤ 연구교수・전임연구원・객원연구원을 재임용할 경우 해당 학과 교수의 추천서로 제2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나 연구참여 실적 및 수행계획서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처우) ① 연구교수・연구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비 및 간접경비로 충당한다.

② 연구교수・전임연구원은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7조(역할 및 활용) ① 연구교수는 연구를 전담하되, 본교 강의시 우리 대학교 외래교수위촉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, 최대 2강좌를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타교 강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, 부득이한 경우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으며, 강의는 1강좌로 제한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